

2022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선정목표 : 50개사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선정대상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비제조업(제조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으로 사용근로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인 기업

※ 기 선정 유망중소기업 관리기간 경과('22년 만료 예정)기업 재신청 가능

◀ 신청 및 선정제외 기업 ▶

-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별 표 4**
- ▶ 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20 ~ '21년)
-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결격업체 기준 **별 표 2**

4. 선정기준

-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위 50순위까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 병행)
*위원 의견(CEO 경영능력, 재무상황 등) 반영 선정기업 수정의결 가능
- 결격업체 기준 (별표 2)

5.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2. 5. 19.(목) ~ 6. 30.(목) 18시까지 접수 및 우편물 도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선정확정) 2022년 10월 중 / 별도통보

6.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대전비즈 홈페이지(공고) - (별지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홈텍스-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⑤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이 없는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⑦ '20년, '21년 재무제표	신청기업 결산재무제표 또는 홈텍스-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⑧ '20년, '2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텍스(최근 2년 신고서 사본 각1부)
⑨ '20년, '21년 수출실적 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⑩ '20년말, '21년말 4대보험 가입자 목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⑪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공고일기준 9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국세)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정부24-지방세납세증명(완납증명)
⑫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신용평가기관의 모형등급 적용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⑬ 기타 증빙자료	평가기준표(별표1) 관련서류

7.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지원사항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및 서울보증 확대 지원 등
- 대전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등

8.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22)로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djbea.or.kr)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index.do) 상단 배너 참조

- 붙임: 1. (별지1호 서식)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2. (별표 1) 평가기준표 1부.
3. (별표 2) 결격업체 기준 1부.
4. (별표 3) 제조업 등 해당 업종 1부.
5. (별표 4)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1부. 끝.

□ 신기술 보유현황

구 분	기술(품목)	등록번호	등록일	기 간	승인기관

※ ① 신기술, 신제품, 특허, 실용실안 구분

② 출원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가점사항

3점 항목 (최대 9점)	·최근 2년 내 사회기여도(사회 기부참여) [최대 3점] - 500만원 이상(3점), 500~300만원(2점), 300~100만원(1점), 100만원 이하(0.5점) ※ 정치자금 기부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최근 2년 내 ① 직원능력개발비 ② 직원 취미생활 지원 [최대 3점] - 4건 이상(3점), 3건 이상(2점), 1건 이상(1점) ※ 년도별 각각 1건으로 산정
	·최근 2년 내 온통대전 충전액 [최대 3점] - 500만원 이상(3점), 300만원 이상(2점), 100만원 이상(1점)
2점 항목 (최대 4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가정친화기업,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장애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줄은일터 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 뿌리산업 운영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대전시 무역사절단 등 참가업체(관련공문), 평가 기준표 제⑪번 항목 외 기타 품질관련 인증
1점 항목 (최대 2점)	타기관 유망중소기업지정, 프로그램등록, 상품등록증, 의장등록증,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① 3점 항목(금액)은 2년간('20, '21년 합산금액)

② 가점은 최대 10점까지로 하며, 가점사항 중 2점항목과 1점항목은 각각 최대 2개까지 인정

<신청서 작성기준>

구 분		기 준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설립년월일		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5. 공장	②소유형태	임차-사용권한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③면적	공장-제조업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기재(부대시설 제외)
6. 일반현황	①업종 ②주생산품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예시: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3자리까지 표기 * 업종코드 기재 필수
	⑤상시근로인원	▪고용보험 증명서상 가입자(년도말 기준) ▪고용보험 비 가입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일자 * 정규직 + 임시직 포함
	⑧기업유형	기업유형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⑨대전에서 사업영위기간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날(또는 대전으로 이전)
8. 재무현황	①매 출 액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
	②자산총액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자산총계
	④부채총액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부채총계
	⑤자기자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자본총계
	⑥당기순이익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9. 기술현황	①연구개발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10. 신기술보유현황		5개까지 인정
11. 가점사항		가점사항 참조
<평가기준표> 별표 1(서식)		
② 총자산 증가율 ⑧ 총자산 순이익율		총 자산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자산총계
⑤ 고용인원 ⑥ 고용인원 증가율		▪고용보험 증명서상 가입자(년도말 기준) ▪고용보험 비 가입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일자 * 정규직 + 임시직 포함
⑩ 경상(연구)개발비율		(경상)연구개발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 ① 평가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함
- ② 증가율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0점 처리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업체평균 / 2020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제공), 2019년 · 2020년 평균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총 점	등 급	배 점
총 점			100.0		
성 장 성 (25)	①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업체평균 매출증가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20%이상 B.10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8.0 6.0 4.0 2.0
	② 총자산 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업체평균 총자산증가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20%이상 B.10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8.0 6.0 4.0 2.0
	③ 수출액 증가율 (당기총수출액/전기 총수출액)	해당업체의 전기수출액 당기수출액 증가율	5.0	A. 70%이상 B. 50%이상 C. 3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0 3.0 2.0 1.0
정착도 및 기여도 (25)	④ 사업영위기간	대전에서 사업영위기간(년)	5.0	8년이상 4년이상~8년미만 4년미만	5.0 2.5 1.0
	⑤ 고용인원	총 고용인원(명)	10.0	50명이상 40명이상~50명미만 30명이상~40명미만 20명이상~30명미만 10명이상~20명미만 10명 미만	10.0 9.0 8.0 7.0 6.0 5.0
	⑥ 고용인원 증가율 ('21년말 상시고용인원 /'20년말 상시고용인원)	기업 인력 채용증가율	10.0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5%이상~10%미만 E.5%미만	10.0 8.0 6.0 4.0 2.0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재무상태 (20)	⑦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5.0 4.0 3.0 2.0 1.0
	⑧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업체평균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0 3.0 2.0 1.0
	⑨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	10.0	BBB+이상 BBB°, BBB BB+ BB°, BB- B+ B°, B- CCC+이하	10.0 8.5 7.0 5.5 4.0 2.5 1.0
기술성 (30)	⑩ 경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매출액)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0 6.0 4.0 2.0
	⑪ 신기술보유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특허, 실용신안권 등록 ISO인증, 해외인증, 국내인증	10.0	A. 5개이상 B. 4개이상 C. 3개이상 D. 2개이상 E. 1개이상	10.0 8.0 6.0 4.0 2.0
	⑫ 기술혁신 노력도	정부지원 기술혁신과제 수행,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녹색기업 관련 인증,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환경친화기업 지정	10.0	A. 5개이상 B. 4개이상 C. 3개이상 D. 2개이상 E. 1개이상	10.0 8.0 6.0 4.0 2.0

가점사항 (10)	⑬ 가점사항 참조	10.0
--------------	-----------	------

※ 신기술 보유 세부내용 / ⑪번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취득 2. 특허·실용신안권 등록 3. ISO인증(국제표준화기구), 6시그마 등 시스템 인증(유효기간 내) 4. 해외인증 : UL, CE, JIS, FCC 등 5. 국내인증 : KS, K, GR, GD,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등

별 표 2 **결격업체 기준**

- 결격사유 조회일 기준, 최근 2년(20~22년 조회일까지) 이내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행정처분 : 경고, 개선명령(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구 분	심사(반영)여부	비고
<행정처분>		
경고	심사대상 (연도별 무관 2회까지) *단, 처분 이행 완료시	심사제외(3회이상)
개선(시정)명령	심사대상 (연도별 무관 2회까지) *단, 처분 이행 완료시	심사제외(3회이상)
영업정지	심사제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과태료, 벌칙>		
과태료, 징역, 벌금	심사제외 *금액 관련 없이 1회 이상	교통법 관련 벌칙(과태료) 제외
<기 타>		
단순고발	심사대상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해명자료는 기업에서 제출
위반 후 처분 진행 중 이거나 처리가 안 된 경우	심사제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심사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심사대상	

제조업 등 해당 업종

- ①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10~C34)
- ② 아래의 열거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구 분	표준산업 분류번호	산 업 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영상산업 - 영상물 제작분야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대전 주력산업 업종 : 무선통신융합,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파란색 표기)
- * 광역협력권산업 업종 : 에너지신산업/에너지워터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개발(붉은색 표기)
- *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용자
1	A01(농업)	154.1	462.3	924.7
2	A03(어업)	251.4	500.0	1000.0
3	B(광업)	149.0	447.1	894.2
4	C(제조업)	125.3	375.8	751.7
5	C10(식료품)	150.9	425.8	905.7
6	C11(음료)	138.6	415.8	831.6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28.9	386.6	773.1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1.6	394.8	789.6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33.6	400.8	801.5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65.2	495.7	991.4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5.4	376.2	752.4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9.0	387.0	774.1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1.4	394.3	788.7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5.8	287.4	574.8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5.5	196.5	393.0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2.3	367.0	734.1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01.1	303.4	606.8
18	C24(1차 금속)	137.8	413.5	827.1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42.8	428.3	856.5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8.0	323.9	647.9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3.5	280.4	560.8
22	C28(전기장비)	110.9	332.6	665.3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23.1	369.3	738.6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70.5	500.0	10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322.5	500.0	1000.0
26	C32(가구)	162.5	487.6	975.3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3.4	340.2	680.4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13.1	339.3	678.5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용자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60.7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0.4	391.2	782.4
31	F(건설업)	100.4	301.2	602.5
32	G(도매 및 소매업)	137.6	412.8	825.7
33	H(운수 및 창고업)	177.9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15.3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23.1	369.4	738.7
36	L(부동산업)	426.5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5	367.4	734.8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95.7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71.2	500.0	1000.0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2.7	500.0	1000.0
41	기타산업	185.1	500.0	100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용자제한 참조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